

의안번호	2213677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E5669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금융·보험업자 수익금액 과세표준 명확화 및 서민·영세소상공인
관련 수수료수익 제외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3항 (과세표준과 세율)	○ 금융·보험업자 수익금액 과세표준 명확화 및 서민·영세소상공인 관련 수수료 수익 제외 －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·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화 － 금융·보험업자 수익금액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·영세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제외	조세지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제3항 (과세표준과 세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금융·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동 과세표준에서 서민·영세소상공인 관련 수수료 수익을 제외할 경우 세수감소가 예상
 - 개정안은 금융·보험업자 수익금액을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화
 -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·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아목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8조의3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제외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서민 및 영세·중소 신용

카드 가맹점 관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수익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, 이와 관계되는 과세표준 산정에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

- 우대수수료 관련 수수료 수입 정보가 현재 미공개되는 가운데,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·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의 경우¹⁾, 관련 업체수, 매출액 및 수수료 수입규모 등은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변화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

-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: 영세가맹점(신용카드 0.40%, 체크카드 0.15%)
-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및 30억원 이하 : 중소가맹점
 - 3억원 초과 및 5억원 이하 : 신용카드 1.00%, 체크카드 0.75%
 - 5억원 초과 및 10억원 이하 : 신용카드 1.15%, 체크카드 0.90%
 - 10억원 초과 및 30억원 이하 : 신용카드 1.45%, 체크카드 1.15%

- 또한, 납세의무가 있는 개별 금융·보험기관 단위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대수수료 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

□ 참고로,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금융·보험업자에는 정부투자금융기관²⁾ 및 민간금융기관³⁾이 있으며(「교육세법」 제3조 및 별표), 동 기관의 이자수입, 배당금, 수수료, 보증료, 유가증권 매각익·상환익, 보험료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(0.5%) 부과

-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신고액은 2023년 1조 5,480억원 등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증가 추세(연평균 14%)

[표 1]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신고액 추이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				
구분	2021	2022	2023	(연평균 증감률)
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	11,933	12,733	15,480	(14%)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년도

1)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<https://www.korea.kr/multi/visualNewsView.do?newsId=148953893>)

2)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

3) 일반은행, 종합금융사, 상호저축은행, 보험사, 농·수협, 집합투자업, 신탁업, 환전영업, 투자매매·중개업, 여신전문업, 대부업

- 2023년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전체 과세표준은 310조원이며 이중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 관련 과세표준은 17조원 수준으로 5.4% 비중 차지

[표 2]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전체 및 유가증권 매각·상환익 관련 과세표준 현황:
2021~2023년

(단위: 조원)

구분	2021	2022	2023
전체	239	255	310
여신전문금융회사 수수료 수익	14 (5.9%)	15 (6.%)	17 (5.4%)

자료: 국세청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